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단517438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4. D

피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5. E

변론 종결2018. 4. 5.

판결 선고2018. 4.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0,433,750원과 그중 30,228,353원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20,289,167원과 그중 각 20,152,235원에 대하여 각각 2017. 8. 30.부터 2017. 10. 19.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망 F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E은 피고 A, B,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 5. 1. 접수 제370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 A, B, C, D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 E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7. 2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G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복수동지점에서 대출받을 차용금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6. 7. 22.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G의 대표이사인 F은 같은 날 G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G은 2015. 7. 28.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 복수동지점에서 1억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빌렸다.

다. 이후 G은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2017. 7. 21.까지로 변경하였고, 국민은행과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도 같은 날로 연장하였으나 변제기에 이를 갚지 못하여 2017. 7.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0. 국민은행에 대출 원리금 90,685,06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한편 G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 위약금, 그리고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아울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비율은 연 10%이고,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462,332원이며, 위약금은 153,860원이다.

바. F은 2017. 7. 4.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를 두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E 사이: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F은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 원금과 위약금 등을 합한 91,301,252원(90,685,060원 + 462,332원 + 153,860원)과 그중 원금 90,685,2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그의 사망으로 피고 A에게 3/9, 피고 B, C, D에게 각 2/9의 비율로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30,433,750원(91,301,252원 × 3/9)과 그중 원금 30,228,353원(90,685,060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20,289,167원(91,301,252원 × 2/9)과 그중 원금 20,152,235원(90,685,060원 × 2/9)에 대하여 각각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7. 8. 30.부터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7. 10. 19.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망 F은 2012년 12월경 자본금 1억 원으로 G을 설립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2015년에 이르러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폐업과 영업 중단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39.91%까지 떨어진 반면에 영업망 확대를 위해 새로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자금문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망인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을 통해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2016년에 이르러 추가 대출도 거부당하자 고향 친구로서 잘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2016. 9. 13. 2,000만 원, 2016. 10. 6. 2,000만 원, 2017. 4. 10. 3,000만 원 등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 7. 4.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후 G은 2017. 9. 26. 대전지방법원 2017하합70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그런데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7. 5. 1. 피고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7. 10. 10. 현재 시가 2억 4,600만 원 정도로 평가되었다.

(4) 반면에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7,000만 원 외에도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빌린 9,000만 원을 비롯하여 국민은행에 대하여 합계 2억 2,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대전세무서장의 각 과세정보제공명령에 대한 회신, 한국신용정보원, 국민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G 파산관재인 1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G 및 망인과 사이에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G은 2015년부터 자금난을 겪다가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원금을 갚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나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등 참조), 한편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은 시가 2억 4,600만 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그 채무는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였다)의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당시 G에 자력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더욱이 G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E의 선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E은, 위 피고는 G과 망인의 자금 사정이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에도 5,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앞서 망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와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7. 5. 17.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다만 피고가 2017. 6. 22. 망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등은 을 제5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이는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망인과 고향 친구로서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이자 한번 받지 않다가 G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망인이 자살하기 얼마 전에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A, B, C,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김인택

별지